

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399호

나. 발 의 자 : 유정희 의원(찬성자 20명)

다. 제출일자 : 2025년 2월 3일

라. 회부일자 : 2025년 2월 6일

2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에서는 명예시장 위촉 인원이 2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고 있어, 다양한 인재들이 참여하는 데 제약이 있음. 이에 따라, 위촉 인원 제한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.
- 위원회 및 간담회 참여 등 임무 수행을 위한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, 이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분야별 다양한 인물을 폭넓게 발굴하고 위촉할 수 있도록, 정원 20명 이내의 정원 규정에 대한 문구 삭제(안 제5조제1항).
- 나. 명예시장으로서의 시정참여, 정책제안, 소통·홍보활동 등을 수행 시 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함(안 제10조제2항).

4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강옥심)

(1)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20명 이내의 범위로 한정되었던 서울특별시 명예시장의 정원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다양한 인재들이 명예시장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음.
- 또한, 명예시장이 명예시장으로서 수행하는 임무 전체에 대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여 수당 지급 범위에 관한 해석상의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.

(2) 명예시장 운영 현황

- 서울특별시 명예시장은 서울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로, 현재 각 분야별로 대표성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20명의 인사가 제7기('24.12.3.~'25.12.2.) 서울시 명예시장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임.

< 제7기 서울시 명예시장 >

연번	분야	성명	소속 및 경력
1	문화예술	고두심	- 배우 - 전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 홍보대사단 단장
2	청년보훈	김세진	- 태재연구재단 선임연구원 - 저서 <나를 외차다>, <한국군의 뿌리> 등
3	인구·저출생	김현철	-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- 전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·정책학과 부교수
4	건강·의료	남궁인	-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조교수 - 조선일보 칼럼니스트
5	도시안보	박원곤	-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- 전 동아시연구원(EAI) 북한연구센터 소장
6	사회통합	염재호	- 태재대학교 총장 -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, 제19대 총장
7	글로벌 관광	오시난	- 서울시관광협회 이사 및 대의원 - ㈜케르반그룹 대표이사
8	건강·의료	오은영	- 오은영아카데미 대표 - 저서 <어떻게 말해줘야 할까> 등
9	도시·건축	유현준	-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- ㈜스페이스컨설팅그룹 대표
10	미래세대	이동수	- 청년정치크루(청년정책 싱크탱크) 대표 - 저서 <캐스팅 보트>, <YS 세계를 보다> 등
11	지방상생	이만기	- 인제대학교 스포츠헬스케어 교수 - 지방시대위원회 위원
12	뉴미디어	이진우	- MBC FM라디오 '손에 잡히는 경제' 진행 - 경제유튜브 삼프로TV(구독자 252만) 부대표
13	산업기술	장동선	- 궁금한뇌연구소 대표 - 전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조교수
14	이민·이주노동	정회옥	-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- 저서 <한 번은 불러보았다. 짱개부터 동남아까지> 등
15	고령사회	정희원	- 서울아산병원 임상조교수 - 저서 <당신도 느리게 나이들 수 있습니다> 등
16	체육	최민호	- 올림픽 유도 남자 금메달리스트(2008) - 전 용인대학교 유도학과 교수
17	미래혁신산업	최재봉	- 성균관대 부총장, 기계공학부 교수 -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자문위원
18	안전환경 (안전,교통,환경)	한문철	- 변호사 - JTBC '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(한블리)' 진행자
19	여성	한젼마	- 러쉬 코리아 부사장 - 호서대학교 문화기획학과 조교수
20	약자동행	홍윤희	- 사단법인 무의 이사장 - 모두의 1층, 서울지하철 교통약자 환승지도 제작 등

- 이는 1기부터의 역대 명예시장단 중 가장 큰 규모로, 현대사회의 복잡성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명예시장의 활동 분야도 다양해진 것으로 보임.

(3) 명예시장 정원 제한 삭제(안 제5조제1항)

< 신·구조문대비표 >

현	행	개	정	안
제5조(명예시장의 위촉) ① 시장은 어르신, 장애인, 전통상인, 문화예술인 등 각 분야별로 <u>명예시장을 위촉하며, 정원이 20명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야를 확대 또는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.</u>		제5조(명예시장의 위촉) ① 시장은 어르신, 장애인, 전통상인, 문화예술인 등 각 분야별로 <u>명예시장을 위촉한다.</u>		

- 동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20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명예시장의 최대 정원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명예시장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- 서울시 명예시장은 상위법령이 아닌 서울시 조례로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정원의 범위에 관해서는 입법 재량이 크게 인정될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명예시장 정원의 변화가 명예시장 제도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.
- 명예시장 정원 증가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으로는, ►직접·참여 민주주의의 실현, ►다양한 사회적 관점의 반영, ►정치적 투명성의 강화 등을 예상할 수 있음.

- 반면, 명예시장의 수가 과도하게 늘어나게 되면, ►시민참여제도¹⁾와의 차별성 부족, ►상징성 및 책임성의 약화, ►선심성 인사의 우려, ►전문성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.
- 이러한 점을 종합하였을 때, 명예시장의 정원은 제도의 장점과 특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될 여지가 있고, 경직성이 높은 조례 대신 서울시의 방침으로써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데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.
- 다만, 명예시장 제도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높아지는 만큼 사업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단기·중장기 계획이 필요하겠음.

(4) 수당의 지급 범위(안 제10조제2항)

< 신·구조문대비표 >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예우 및 수당 등) ① (생 략) ② 명예시장이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	제10조(예우 및 수당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제3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한 때에는 해당부서의 ----- -----.

- 동 개정안은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 외에 명예시장으로서 행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.
- 실제로 명예시장은 위원회 및 간담회 참석, 현장점검 등 명예시장으로서 관여하는 각종 활동(위원회, 토론회 참여 등)에 대해 수당을

1) 우수제안 제도, 시민참여예산 제도, 서울청년참여기구 제도, 시민제안플랫폼(상상대로 서울) 등

지급받고 있으나, 현행 조례의 표현으로는 명예시장이 정기회의 또는 수시회의 활동을 할 때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되어 조문과 현실의 괴리가 있었음.

- 따라서 동 조례 제3조2)에 따른 명예시장의 임무수행 활동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조례 해석의 오류를 방지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- 다만, 서울시가 현행 조례상의 수당 지급 대상을 임의로 확대 해석하고 수당을 지급해온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며, 실무와 조례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임.

전문위원	임창균(2180-8113)	입법조사관	홍민지(2180-8118)
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

2) 제3조(임무) 명예시장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제안
2.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의 주요 정책과정의 참여
3.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 활동
4. 그 밖에 시와 시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의안번호
2399

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	제 안 자	제안일자		소관 상임위	
	유정희	2025. 2. 3.		문화체육관광위원회	
주요내용	〈개정 필요성〉 ○ 다양한 인재들이 명예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인원 제한을 완화 ○ 임무수행을 위한 수당 지급 명문화하여 투명한 운영 도모 〈주요 입법 요지〉 ○ 분야별 다양한 인물을 폭넓게 발굴하고 위촉할 수 있도록, 정원 20명 이내의 정원 규정에 대한 문구 삭제(안 제5조제1항) ○ 명예시장으로서의 시정참여, 정책제안, 소통·홍보활동 등을 수행시 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함(안 제10조제2항)				
추진경과	○ 2025.2.3.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(유정희 의원 대표 발의)				
부 서 검토의견	원안가결(○) / 수정가결 () / 부결() / 보류()				
쟁점사항 (의회동향, 문제점 등)	○ 특이사항 없음				
대응방안	○ 조례개정 취지와 필요성에 동의함 ※ 조례 개정 담당 과장이 개정 필요성에 대해 유정희 위원에 기 설명('24.12.)				
상 임 위 처리결과	○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(원안가결, 수정가결, 부결, 보류, 미상정으로 구분) - 수정가결시 수정내용, 부결·보류·미상정시 사유 기재				
향후계획	○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 ○				
담당부서	홍보담당관	팀장	현장홍보팀장 권석진(☎2133-6415)	담당	행정6급 박지혜 (☎2133-6457)